

의안번호	2220793
의 퇴 인	배준영 의원
회 답 일	2026. 9. 16.
추계번호	26A4336

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(자발적 감축실적거래소등)	○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감축실적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의 안정성·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6조(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 지원)	○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－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, 통계의 작성 및 공표 － 수요 창출 사업, 국제협력 및 국제동향 조사 － 중소기업의 감축사업 발굴 및 감축실적의 검증·인증·등록 지원 －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 ○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7조(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한 조세감면)	○ 거래소를 통한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22조(과징금)	○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24조(벌칙)	○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	의무규정
6	안 제26조(과태료)	○ 거래사실 통지의무 위반, 운영규정 미승인, 보고·자료제출 거부 등을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(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 등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6조(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 지원)	
3	안 제17조(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한 조세감면)	
4	안 제22조(과징금)	미대상(재정수입의 증가)
5	안 제24조(벌칙)	
6	안 제26조(과태료)	

2. 상세사유

- 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등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출연·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,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,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제정안에 따른 자발적 감축실적이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, 인증을 받아 등록기관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량(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할당대 상업체의 감축실적과 제정안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외한다)을 말함

- 다만, 거래소의 지정·설치 여부와 그 운영규모,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·내용 및 등록기관에 대한 출연·보조 규모, 조세감면의 대상·세목 및 감면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유에 해당함
 - 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거래소를 지정할 것인지 직접 설치·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거래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거래소의 설치·운영 형태와 그에 따른 소요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
 -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 추진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고 등록기관에 대한 출연·보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원 대상과 규모가 유동적이며,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범위·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
 - 조세감면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관계 법률에서 감면 대상·세목·감면율 등을 별도로 정하여야 시행될 수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,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규모도 예측하기 곤란하여 감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분을 산정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